

# 국민연금·기초연금, 조사 결과 상호공유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

-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,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-

보건복지부는 1월 16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및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이번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및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.

최근 국민-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. 이에 따라, 사망 여부·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,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,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그밖에도 이번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은 임의(계속)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완화,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, 고액·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·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“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·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,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별첨> 1.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 
 2.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 <총괄> <가입>	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재만 (044-202-36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민 (044-202-3609)
		담당자	사무관	노호영 (044-202-3633)
<국민연금 확인조사> <크레딧>	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	책임자	팀 장	박정우 (044-202-36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송이 (044-202-3632)
		담당자	사무관	강봉길 (044-202-3631)
<기초연금 확인조사>	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	책임자	과 장	조승아 (044-202-3670)
		담당자	사무관	권혁찬 (044-202-3671)

